

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제 594 호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11. 10.
제출자 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-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피처분자의 의견진술의 기회를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거 부여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의견진술 조항 신설 (안 제3조의2)
 - .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함.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 :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7조
- 입법예고 : 불필요

4. 본 문 : 붙임과 같음.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

고성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의견진술) ①제3조에 의하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 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 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과태료)① ~ ② (생 략) <u>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</u></p> <p>(신 설)</p>	<p>제3조(과태료)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 삭 제</u></p>
	<p>제3조의2(의견진술)① 제3조에 의하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.</p>